

● 제285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3. 7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 299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성배 의원(대표발의) 외 11명
- 나. 제안일 : 2018. 12. 28.
- 다. 회부일 : 2019. 1. 7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'10명 이상 20명 이하'로 변경함(안 제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(이하 “연구단체”)의 구성 요건을 조정해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됐음.

2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‘10명 이상’에서 ‘10명 이상 20명 이하’로 조정(안 제3조제1항)

- 서울특별시의회는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입법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·정책 개발 등을 위해 의원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.
- 연구단체는 의원 10명 이상이 모이면 구성 가능하고,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동시 가입할 수 있음(제3조).¹⁾
-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발히 활동해왔으며, 2019년의 경우 의원 110명 중 106명이 연구단체에 가입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초청 강의, 토론회, 간담회, 연구 활동 등에 임할 예정임.
- 이처럼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상황에서, 보다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과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의회 내에서 제기되어 왔음.
- 제10대 전반기 의회역량강화TF²⁾ 회의에서도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가입 의원 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된바 있음.

1) 한 개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고, 연구단체 의원 모두가 같은 교섭단체 소속이어서도 안 됨. 다만 의회에 교섭단체가 한 개인 경우에는 예외임(제3조).

2) 제10대 전반기 의회역량강화TF는 입법·정책 생산 능력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과 서울특별시의회 및 의원의 위상 확립과 의정활동 역량 극대화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·운영됐음(2019.8.31.~11.8.)

- 또한 등록된 연구단체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%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배분해오고 있으나,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1개 연구단체는 연간 6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(제7조)³⁾는 점에서도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.

<표-1> 최근 3년간 의원연구단체 규모(최초 등록일 기준)

(단위 : 개)

		단체 수				
		합계	~15명	~20명	~25명	26명~
2019(상반기)		16	11	2	1	2
2018	상	8	5	2	1	-
	하	12	8	2	-	2
2017		18	14	2	1	1
2016		13	5	4	2	2

- 본 개정안은 이렇듯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화와 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단체 규모를 '10명 이상'에서 '10명 이상 20명 이하'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임.

<표-2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. ② ~ ③ (생략)	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----- 10명 이상 20명 이하 -----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3) 제7조(연구단체의 지원)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%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6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.
② ~ ④ 생략

- 한편 2019년 상반기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결과 모두 16개 단체가 승인을 받았으며, 이 중에는 가입 의원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단체 3개가 포함돼있음.
- 따라서 2019년 상반기 연구단체 운영 일정과 본 개정안 심사·의결 시기를 고려할 때, 개정 내용을 즉시 시행할 경우 연구단체 구성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3 종합 의견

-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현행 10명 이상이면 구성 가능한 연구단체 규모를 ‘10명 이상 20명 이하’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연구단체가 내실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, 그 취지와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 개정 내용을 즉시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연구단체 구성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할 것임.